



#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(2% 이내) 표준화 지원자격 안내

○ 재외국민 및 외국인(2% 이내)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)

| 구분        | 내용   |
|-----------|--|
| 해외근무자     | <b>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해외근무/사업/영업</b> 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 |
| 해외근무자의 자녀 |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/사업/영업 하는 기간 동안,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<b>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</b> 수료한 자  |
| 해외재학기간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: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 단 해당 1개 학년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</li> <li>•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</li> </ul>   |
| 해외체류일수 조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: 학기 개시일부터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<b>학생 본인은 3/4이상</b>을, <b>해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이상</b>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</li> <li>•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365일)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해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</li> <li>• 체류일수 산정 시, 소수점 절사</li> </ul> |

○ 제출서류

※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

| 구분  | 제출서류   |
|---|--|
| <b>재외국민 및 외국인</b><br>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</li> <li>2. <b>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증명서</b></li> <li>3. <b>초·중·고등학교 성적증명서</b></li> <li>4. 가족관계증명서(부모, 학생)</li> <li>5. 출입국사실증명서(부모, 학생)</li> <li>6.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(부모, 학생)</li> <li>7. 여권 사본(부모, 학생)</li> <li>8. 재외국민등록등본(부모, 학생)</li> <li>9.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(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)</li> <li>10.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)</li> <li>11.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(현지 취업자 제출서류)</li> <li>12.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(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)</li> </ol> |
| <b>전 교육과정 이수자</b><br>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</li> <li>2. 초·중·고 재학증명서</li> <li>3. 초·중·고 성적증명서</li> <li>4. 출입국사실증명서</li> <li>5.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</li> <li>6. 신분증 사본</li> </ol>  |